

#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

- '26.4.30.까지 휘발유 △7%, 경유·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△10% 인하 유지

## [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]

정부는 '26.2.28.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(현행 휘발유 △7%, 경유·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△10%) 조치를 '26.4.30.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.

### <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>

(단위 :원/ℓ)

유종	인하 전 탄력 세율	'21.11.12. ~ '22.4.30.	'22.5.1. ~ 6.30.	'22.7.1. ~ 12.31.	'23.1.1. ~ '24.6.30.	'24.7.1. ~ 10.31.	'24.11.1. ~ '25.4.30.	'25.5.1. ~ 10.31.	'25.11.1. ~ '26.4.30.
		△20%	△30%	△37%	휘발유△25% 경유△37% 부탄△37%	△20% △30% △30%	△15% △23% △23%	△10% △15% △15%	△7% △10% △10%
휘발유	820	656(△164)	573(△247)	516(△304)	615(△205)	656(△164)	698(△122)	738(△82)	763(△57)
경유	581	465(△116)	407(△174)	369(△212)	369(△212)	407(△174)	448(△133)	494(△87)	523(△58)
부탄	203	163(△40)	142(△61)	130(△73)	130(△73)	142(△61)	156(△47)	173(△30)	183(△20)

\* ( )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

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,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.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△57원/리터(ℓ), 경유 △58원/리터(ℓ), 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△20원/리터(ℓ)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[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]

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,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국무회의('26.2.24. 예정) 등을 거쳐 '26.3.1.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세제실	책임자	과 장	공 석
	환경에너지세제과	담당자	사무관	구본녕 (kbn88@korea.kr)